

제42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26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2)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1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1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15.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16.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17.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18.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9)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4)
2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3)
2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9)
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9)
2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4)
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5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5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87)
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22)
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5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3)

상정된 안건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4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4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4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12)	4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5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5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5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5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5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5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5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5
1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5
1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5
15.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5
16.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5
17.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5
18.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5
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9)	5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4)	5
2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3)	5
2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5
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9)	5
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9)	5
2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4)	5
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5
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5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5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5
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5
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5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5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5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5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5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5
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5
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5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5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5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5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5
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6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6
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6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6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6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6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6
5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6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6
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6
5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87)	6
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22)	6
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6
5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3)	6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7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12)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1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1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15.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16.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17.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18.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9)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4)
2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3)
2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9)
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9)
2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4)
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5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5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7)
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2)
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5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3)

(10시11분)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등 총 22건의 제·개정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공무원법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주호영 의원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주호영 의원안에 덧붙여서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외에 주호영 의원안은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및 온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를 추가하고 있고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 온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 및 마약류관리법 관련 위반죄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제2항제8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의 분리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 및 온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가 추가되었고 그다음 분리선고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 및 마약류의 단속·수사·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임용 제한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중독자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교육공무원법에서도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 군인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퇴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27조(당연퇴직) 본문에서는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다만 제8조제2항제6호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 중대범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안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해야 되는 특정 범죄에 마약류관리법상 범죄를 추가하여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추가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11월 20일 법안소위 심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범죄자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당연퇴직 사유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페이지 왼쪽의 개정안 표를 보시면 주호영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이 동일하게 마약류관리법상 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또 당연퇴직 사유로 주호영 의원안에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되는 특정 범죄도 마약류관리법상 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2항제6의2호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8호 라목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제27조에서 주호영 의원안을 보시면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는 마약류관리법의 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경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에 마약류의 높은 중독성에 비취 볼 때 마약검사에서 양성인 사람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중독자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타 기관의 예시 및 경찰공무원의 성격에 맞추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차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타 기관의 예시 이게 어떤 게 있는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군인사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중독자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인사법이나 교육공무원법 그에 준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중독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중독자라 하면 거기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중독자라는 용어만 나오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는 구체적인 중독자의 기준은 나오지 않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기준은 제가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답을 할 때 타 기관의 예시에 맞춰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타 기관의 예시를 모르고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없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뭘로 하는데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내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소위원장 서범수 그 내부적인 기준이 뭐냐고요. 내부 기준이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이 아니라면서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시행령·시행규칙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관련되어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차장님.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은 추후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님, 4페이지 마약 관련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경찰 측 의견이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반영된 사항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4페이지의 경찰청 의견……

○위성곤 위원 예.

○전문위원 나아정 중독자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위성곤 위원 예.

○전문위원 나아정 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해서는 지금 군인사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서도 그냥 중독자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에서 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규정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법률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료적으로 판단해서 규정된,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 규정을 하면?

○전문위원 나아정 제출된 법률안에서는, 지금 6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반대 의견입니까, 찬성 의견입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찬성……

○경찰청차장 유재성 찬성 의견입니다. 저희도 다른 법과……

○위성곤 위원 찬성 의견?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다른 법과 같이 중독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법에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다른 부처와 같이 내부 기준으로 정해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제가 여쭙어보고 싶은 것은 그 내부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괜히 이 뒤에 ‘현재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타 기관의 예시’라는 말을 적어 놓아서 내가 그러면 타 기관의 예시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타 기관의 예시를 지금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제가 그 부분을……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봤다고요, 지금.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은 더 추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뒤에 아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쓴 사람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담당자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경찰청인사운영계장 박상구 경찰청 인사운영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원의 경우에는 검사해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중독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따로 검사를 해서 중독성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중독성이 있다 없다 그 자료를 가져와야지 임용결격의 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료기관에서 중독자로 판정하면 중독자로 인정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찰청인사운영계장 박상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발의된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주호영 의원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하고 나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럼시다.

○전문위원 나아정 12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경찰공무원 각종 시험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및 재직 중 정기적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이해식 의원안은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방법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명시하고 재직 중 정기적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안은 재직 중 마약류 투약 검사 근거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을 임용결격 사유와 당면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 신규채용시험 시 및 재직 중 마약류 검사 실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시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해식 의원안은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시험방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시험 시 신체검사의 일환으로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신규채용시험의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령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서 6종의 마약류에 대한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승진시험에 신체검사를 도입해야 하는데 승진시험에 신체검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승진시험 외에도 인사심사나 특별승진 등 다양한 승진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남용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신규채용시험의 경우는 이미 마약류 검사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달성되어서 개정 실익이 낮은 부분이 있고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시험방법 등은 현재 시행령 이하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검토할 재직 중 마약류 검사로 대신하는 방법이나 마약류 검사의 침익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수정의견과 같이 시험방법 등 위임 조항에서 신규채용 시 마약류 검사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 대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중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신규채용 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의3 등 개정안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점, 재직 중 마약류 검사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그 내용들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조문대비표 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부분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20조 제2항에서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시켜서 시험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을 보시면 20조 제2항에서—기존의 위임 조항입니다—여기에서 시험방법 부분에 시행령의 규정을 모두 상향시키지 말고 신규채용시험의 경우에는 22조의2 제1항에 마약류 검사 실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재직 중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 제22조의2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해식 의원안과 권성동 의원안의 차이는 2항에서 검사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항에서도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직무수행을 위하여 검사를 하도록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2항이 없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해식 의원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신규채용 때는 이왕 개정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기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하자고요, 경찰관들?

○전문위원 나아정 기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의 경우에 하지 말고 재직 중 정기적인 마약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다 신체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 모든 경우가 다 승진시험을 통해서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찰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는 조치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재직 중 마약류 검사를 언제 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아정 정기적인 검사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이나 부분들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뒤에 아시는 분 좀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임용 때만 하고 재직 중에 별도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용을 할 때 그때 신체검사를 하고 이때 마약류 검사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래서 앞의 부분은……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매년 종합검진 안 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것은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때 하자는 거예요, 뭘니까, 지금 이것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니까 신규임용할 때 마약류 검사를 이미 하고……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알겠고, 재직 중인 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재직 중인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소위원장 서범수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다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 법안에 넣으면 시행령에 얼마 주기로 할 건지 그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에서 정해서 재직 중 마약류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승진시험도 있고 특별시험도 있고 심사승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굳이 마약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성희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약류가 여러 가지로 회피할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하니까 법률에서 규정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택해서 시행령에서 경찰들을 어떻게 마약류 검사할 건지를 정해서 하자라는 취지이신 건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신규채용 시에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재직 중 검사에 대해서는 승진시험에서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고 그 실시 대상이나 시기·주기·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구조로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제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경찰의 승진에는 시험뿐만 아니고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진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만 국한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단지 여기에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담당 국장이……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감사관 고정삼입니다.

일단 법을 개정해 주시면 실시 대상이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군은 정원의 30%를 마약 검사를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0%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을 정하는 때에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13만 명이다 보니까 10%를 하면 1만 30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예산을 어떻게 정할지는 시행령을 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군에서 30% 검사하는 것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다는 건가요?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그렇습니다.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별로, 부대 단위별로.

○박정현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공무원 중에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감 이하 실무자들한테는 이런저런

애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그래서 일단 검토 방안이기는 한데요. 총경급 이상과 마약부서 수사관들은 전원 매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10%……

○**박정현 위원** 마약범죄 단속·수사하는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흥가나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형사기동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그건 시행령을 만들 때, 제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예, 예산 수반됩니다. 지금 개당 4만 1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10% 하는데?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예.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는데 신체검사 하지요? 종합검사를 하잖아요.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아니요, 신체검사는 임용 뒤에, 들어올 때.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아니요. 평소에 건강검진.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예, 건강검진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건강검진 하지요?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때 하나 추가로 삽입하면 안 되나요?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는 바는 있는데요. 소변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소변검사를 하게 되면 임회하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검사를 위해서……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서범수**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구나.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질문을 하면 군인 경우 30% 하는데 여기서 적발률이 어느 정도 돼요?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지금 군은 시행령상에 30%를 해 났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군은 언제부터 하도록 돼 있었어요?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군은 24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게 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되네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모두 해야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경찰공무원만 마약류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청감사관 고정삼** 경찰공무원……

○**위성곤 위원** 잠깐만, 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지난번에 경찰관이 마약을 하고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지적도 받고 그러면서 경찰관에 대해서 마약류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마약 단속을 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경찰공무

원에 대해서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경찰 전체가?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도 방금 위성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전 경찰을 상대로 마약 검사한다는 것은 경찰을 마약범죄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찰의 사기 문제와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굳이 한다면 전 경찰을 할 게 아니라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든지 무언가 보다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경찰관이 마약에 손을 댄 사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걸 과연 이렇게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가 듭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소위원장 서범수** 사실은 차장님,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위임은 하되 그 시행령을 설계할 잘하셔야 될 겁니다. 경찰의 인권침해 소지라든지 아까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재적인 마약 투약자로 봐서는 안 된다. 단지 경찰이 마약에 조금 노출될 수 있는 빈도수가 많으니 걱정이 돼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지 어떤 마약의 잠재적인 범죄자로서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위임 근거규정은 봐 두겠습니다만 시행령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 때 마약단속부서라든지 아니면 지휘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면서 현장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한마디만 남겨 놓고 싶은데 군과 경찰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하는 것은 그 두 직군이 무기를 가지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법을 만드는 것이지 경찰 일반이 마약범죄에 더 노출될 거라는 의심을 갖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추가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기능을 설계해야지 일반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저도 부연해서 설명,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을 만든다면 무작위적으로 전 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아 보이고 마약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이러한 부서로 제한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걸 부연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그 시행령 만들 때 미리 국회에다가 보고를, 설명을 해 주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20페이지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행령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으셨는데요. 개정안들은 내부 구성원에게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내부 혼란 방지와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개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제8조 제2항제6의2 중독자에 대한 부분과 제8호 라목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특정하여서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먼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여 경찰의 방첩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경찰은 현재도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방첩 임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방첩활동을 규정하여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동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방첩과 기존의 경찰의 임무와의 차이점을 좀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방첩을 추가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현재 경찰법은 대간첩 작전 수행과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들은 개념상 방첩이, 3페이지의 왼쪽 정의 조항을 보시면 방첩이라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관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개념상 여타의 경찰의 직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경비·요인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에 방첩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소위 자료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범수 의원안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절차 등을 마련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식 의원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방첩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첩은 간첩활동을 막는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적국의 간첩·파괴 행위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 실무적 의미로는 방첩활동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이 우리 사회의 국민을 보호 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의 대간첩작전은 방첩활동과 의미상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규정 실익이 있다고 보이고 국가정보원 소관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법률로 상향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주요 인사의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경찰법과 동일하게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첩활동 근거를 법에 이렇게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방첩업무 규정상 방첩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 측면에서 정보활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말씀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방첩활동이라는 이런 업무를 경찰 관련 법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현재도 방첩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현재는 국정원의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에 경찰청도 방첩기관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법에 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현재 업무보다 나아지는 게 뭔가요,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를 떠나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법에 근거를 두고 하면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런 점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현재 이 법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 법에 명기된 방첩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경찰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게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다만 법적 근거를 둔다는 것인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법적 근거를 두고 뒤에서 논의하게 될 방첩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범죄신고자 보상금 규정에 의하면 방첩활동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을 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부남 위원 이 방첩활동을 법에 명시하게 되면 방첩활동 결과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수사까지 지금 연계되는 것인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방첩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사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그게 작전까지도 연계가 됩니까?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건 물론 제가 법을 발의했습니다만 대간첩작전하고 방첩활동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니까 대간첩작전은……

현재 간첩이라고 하면 적국인 북한만 대상이 되는데 대간첩작전 그러면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첩 그러면 전체 외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지요, 거꾸로지.

뒤에 혹시 말씀을……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면 안보심의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해 보세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안보심의관입니다.

대간첩작전은 저희가 경비와 병력을 동원해서 제압하는 활동이고요. 방첩활동은 저희 방첩조직원들이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걸 견제하고 수사로 이어지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방첩활동이 더 넓은 개념 아닌가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방첩활동이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소위원장 서범수 작전 수행도 포함이 되지.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작전 수행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작전 수행은 경찰 고유의 범죄를 제압하는 활동에 들어가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개념과 목적, 은밀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수사하고, 막판에 수사과정 중에 대간첩작전 들어가고 수사하고 이게 다 한 묶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대간첩작전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활동에 대해서 경찰력을 총집중해서 제압하는 활동이고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방첩활동은 은밀……

○소위원장 서범수 제압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 방첩은?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은밀하게……

○소위원장 서범수 진짜요? 구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그런데 그 구분이, 겹치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데 목적과 수단 측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외국과 적국의 정보활동을 견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대간첩작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차이가 있다고요?

○위성곤 위원 뭐가 차이가 있지? 방첩이 간첩에 대해서 방어한다는 개념의 한자 용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활동하고 방첩활동하고 이렇게 조금 대비되는 개념인데 방첩활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의 그런 활동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위성곤 위원 아니, 그것도 간첩들이 있는 거잖아요. 간첩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걸 수사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목적을 다 합쳐서 방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니까 간첩은 현재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범위가 한정,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고요.

○위성곤 위원 아니지요. 간첩이라는 개념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닙니다. 현행법상 간첩이라는 것은 범위가 좁습니다. 좁고 방첩은 전체 외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왕 모 씨라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이 중국 정부를 대리해서 국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방첩요원들이 계속 감시하고 정보활동하고 그리고 직접 간첩죄 처벌은 못 하지만 관련된 국내법 위반,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관계기관에 고발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제를 하고 결국은 지금 운영하던 대형 식당을 하지 못하고 거의 활동이 정지가 돼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 방첩요원들의 주목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방첩활동의 컨트롤은 어디서 합니까? 국정원인가요, 방첩사인가요, 경찰인가요, 3개의 기관에서?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큰 틀에서 전체 국가방첩전략회의를 이끌어 가는 기관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서 크게 국가방첩 그다음에 경제방첩, 방산방첩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경찰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범죄예방과 수사, 범죄예방과 제지라는 그 큰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방첩이라는 문패를 경직법에 달아 주심으로 인해서……

○양부남 위원 더 잘할 수 있다?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첩 인프라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그다음에 포상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내놓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말하자면……

○양부남 위원 내놓고 하면 잘하겠다는데요.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제가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간첩작전 내지는 방첩활동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도 명확하게 가르마를 못 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사항은 없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나번, 방첩 개념을 포함시키는 경우에 경찰관의 방첩활동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첩활동의 정의를 서범수 의원안은 방첩활동을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으로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절차로서 경찰관 방첩활동의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첩활동의 대상 등과 관련하여 위임 규정이 있는데요. 방첩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정보활동의 범위와 처리기준, 대응활동의 종류·절차·한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첩활동의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이 적법한 방첩활동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개정안 제5조의2 조 제목은 방첩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각 항에서는 방첩활동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체계·자구 차원에서 개정안 제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대응활동은 방첩활동에 해당하므로 해당 활동을 방첩활동으로 약칭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7페이지의 제5조의2가 방첩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1항에 방첩활동의 정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대응활동이 방첩활동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조문에 넣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넣고 아래에서는 그 조항을 받아서 규정을 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개정안은 방첩활동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방첩활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하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다만 방첩활동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경우에는 왼쪽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다음은 라번 11페이지,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입니다.

서범수·이상식 의원안은 방첩활동의 공로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방첩활동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제보를 촉진하고 경찰청이 방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을 보시면—원쪽 박스에 있는데요—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범인 검거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활동에 협조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테러범죄 예방활동에 대해서만 그 규정 범위가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첩활동의 경우에는 테러범죄와 비교하여도 그 의미가 넓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의 부칙입니다.

시행령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법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먼저 2페이지 가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 나번 경찰관의 방첩활동 절차 등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 경찰청 의견은 방첩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만 방첩활동의 처리 기준, 절차 등은 방첩활동 기법 유출 등 보안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보다는 비밀로서 관리할 수 있는 예규·지침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페이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관련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방첩활동이 기밀 탐지·수집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외국 정보활동에 대한 방첩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 라번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범인 검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방첩활동 공로자 포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방첩활동의 절차·대상·한계 등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경찰 의견은 비밀 유지를 위해서 예규와 지침으로 하겠다는 의견인데 저는 대통령령보다 더 센 법률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칫 방첩활동을 빙자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 절차에 관해서 개정안에 한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방첩활동의 처리 기준, 절차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방첩활동 처리 기준, 절차 등의 규정에 대해서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 법에서 빼고 지침으로 하자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시행령에서 다 담은 내용들을 내부의 비밀로 엄격하게 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안에 이런 절차나 처리 규정 같은 경우에 비밀로 할 만한 사항들이 있나요? 어때요? 어떤 내용들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되나요, 내용은 몰라도 절차, 처리인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안보수사심의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입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국익저해사범을 의미하는 안보사범처럼 방첩사범도 결국 첩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보사업처럼 방첩사업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 통신제한조치 같은 통신법상의 조치들을 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까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외부에 공개가 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것들이 결국은 저희 대상과 방법이 노출되어서 국익에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들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방첩의 대상은 거의 다 외국 국적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공관원이라든지 상사원이라든지 외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및 견제 그리고 특수한 활동들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좀 저해될 수……

○**소위원장 서범수** 현재 경찰에서 방첩업무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지금은 국정원법에 근거해서 국정원이 제정한 방첩업무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대통령령이지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경찰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격을 낮춰서 은밀하게 하자는 거예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거기에도 방첩업무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첩업무의 개념 정도, 활동의 범위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 말씀드린 것

처럼 첩보를 입수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보안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수사와 제압 조치로 이어지는지 등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앞서 간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아까 직무권한대행께서는 간첩은 북한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형법 98조에 간첩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간첩을 규정한 조항이에요. 적국이라면 모든 나라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요, 지금 적국이라면 교전 중이거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적국이라는 개념이 좀 제한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요,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는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적국에 포함이 되지요. 우리나라가 적국을 개념적으로 정해 놓습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인 경우는 반국가단체로 국가보안법에서 다루고 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제어하는 법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국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첩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서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는 방첩활동 처리 기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방첩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물론 외국인을 주로 상대를 한다는데 우리 국민을 상대로도 면담과 미팅을 꼭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또 국민을 상대로 관련 자료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면담에 응하거나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첩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러한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 방첩활동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계는 예규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경찰이 편의주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니멈으로는 대통령령이 필요하고 제 의견은 더 필요하다면 한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만약 방첩활동 했던 사람 면담할 경우에, 면담도 필요하지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안 만나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저희 정보수집 활동 내지 첩보의 가치를 검증하는 활동들은 당연히 임의적인 절차를 거치게, 특히 내국인을 상대로 한 것은 임의적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절차……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절차를 규칙으로 해 버렸을 경우

에 표면상으로는 임의적 자료 제출하고 임의적 면담이라 할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강제적인, 임의성이 상실된 그러한 방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지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아까 적국에 대한 이야기 잠깐 있었는데요. 그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판례상 유일하게 북한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교전이나 적대적 관계 이래서……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적용해서 송치도 하지만 간첩죄를 최근에 적용한 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개정할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항상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간첩, 미국 간첩 이런 것은 성립하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래서 형법 간첩죄 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경찰청차장 유재성 원래 방첩의 총괄은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 방첩업무 규정에 의해서 경찰이 방첩기관으로 되어 있고 방첩활동을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경찰 관련된 법에 방첩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올리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찰청 입장은 현재에도 방첩업무를 경찰이 국정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방첩업무라는 것이 은밀하게 활동을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방첩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만 세부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하면서 내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그 내부 지침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권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국가경찰위원회 통과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을 다 준수하면서 경찰이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기준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다 고려해서 기준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찰에서 방첩활동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지는 경찰법에 넣는데 그러면 결국은 국정원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국정원은 뭐라고 그래요? 국정원 의견은 들어 봤나요, 이 법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방첩활동을 경찰의 업무로 명시할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국정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국정원의 의견은 직접 물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정원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7대 방첩기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이때까지는 방첩활동을 전부 국정원이 컨트롤타위가 돼서 경찰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하게 된 게 예를 들면 방첩업무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

행이 되다가 이제 이 업무 자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지는 경찰법에 집어넣어서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같이 하고 있는 국가 방첩업무를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된 규정의 근거가 뭐예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방첩업무 규정에 따라서……

○**소위원장 서범수** 대통령령으로 하다가 지금 법률로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경찰관법에 의해서 독립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나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지금 의미가 그렇게 된다고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하다가 법으로 올렸다고, 경찰에서도 방첩활동을 할 수 있어라고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법이 우선이지, 대통령령보다. 그 관계도 있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그게 저희가 경찰만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제가 말씀드리면 국정원법을 찾아보지 않아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국정원의 방첩업무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려면 상위법인 국정원법이든 어느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방첩업무 규정이라는 게 상세한 방첩업무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를 그 법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국정원하고는 전혀 의견 협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네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의견 조회는 보냈는데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일단 경찰도 지금 뭘 하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수준이라서 국정원 의견 조회를 포함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예규나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내용은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시행령은 안 된다고 말하면 저희가 납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경찰청에서 의원실로 어떤 식의 시행령과 예규를 다룰 거라서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간첩법도 좀 읽어 보라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위성곤 위원** 안건을 마무리 짓기 전에……

○**소위원장 서범수**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시고.

○**소위원장 서범수**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국정원법에 방첩활동이 있네요.

○**위성곤 위원** 있어요.

○권철승 위원 4조에 보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대공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겠네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제가……

자, 이거잖아요. 제가, 법을 낸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지금 이게 경찰 단독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이 방첩업무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현재는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고 그 일부를 경찰에서 이렇게 해 왔다고 한 게 국정원법에 있을 거고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방첩업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지 경찰법에 이걸 집어넣으면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경찰이 따로 독립해서 방첩활동 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국정원의 의견을, 국정원하고 같이 협의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뭘 하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그리고 더욱더 잘하기 위한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인정은 하되 이 가르마를 좀 타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서 국정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봅시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국정원 의견도 우리가 한번 들어 보고 그리고 경찰에서 이것 뭘 답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권철승 위원 국방부에 방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요. 여러 사람 의견을, 여러 부서의 의견을…… 이 방첩활동 하는 게 꼭 국정원, 경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첩사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기관들도 있다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다른 부서 의견은 여기에 지금 전혀 개진이 안 된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한번 다시 협의를 하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안전을 정리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1966년 판례로 전쟁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대하는 국가 또는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으로서 형법 제98조의 적국 또는 적대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결과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적국의 관계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적대·교전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의 기능을 침해할 의도를 가진 외국 또는 단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법상의 전쟁 당사국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적국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은 모두 적국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활동을 해야 된다, 경찰이 활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법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한 개정안으로 주로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거나 금지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에 한 번의 소위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의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 예외사유를 업무·직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규모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집회와 시위가 폭력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한다는 의견, 예외사유를 직무·업무로 규정하면 인근 다른 기관에 대한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 대법원장을 향해서 외치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사유를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 경찰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와서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법 제11조를 통해 집회·시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공관에 준해서 기능 면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의 권리를 절대 금지의 형식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크지 않은 논점을 먼저 정리를 하고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집무 수행을 위해 경계로부터 100m를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윤건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 현행법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국무총리 공관을 3호에 함께 규정하고 4호를 삭제하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함께 규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건영 의원안에서는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에 대해서도 조문의 통일성 차원에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개정한다면 이 조항은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현행 제5호 다목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로 윤준병 의원안에서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 공관’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 공관이라는 용어는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저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이를 치유하는 개정안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 예외사유를 신설하면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 공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경우에 그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때 그리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업무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혹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조금씩 그 예외사유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지금 나눠 드린 조문 제1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해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이건 업무공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이 부분은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통적으로 업무공간에 대해서는 그 장소의 기능이나, 그러니까 업무공간이든 집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3호에서 보시면 대통령 관저 그리고 각 공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준을 보시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 그리고 국회의장 공관에 대해서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라고 해서 현재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현행법 단서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이 직무를 방해하는지, 아니면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그 예외사유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효율적인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조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업무공간에 대해서는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공통적으로 기능이나 안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총리 공관에 대해서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외교사절의 숙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업무공간에 대해서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집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저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구조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으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관저 그리고 각 공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규정하면서 단서를 받아들이고 나뉘어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받아들이되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 앞에서는 그 대상으로 시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면 조금 더 판단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집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6페이지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윤건영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집회 장소 규정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헌법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해서 집회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금지 장소별 단서 규정을 통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직무 방해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논쟁거리를 명확하게 좀……

○전문위원 나아정 일단 업무공간과 집에 대한 것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공간과 집에 대해서 금지 장소로 규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것, 의사당 그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히 그 장소의 기능이나 안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규정을 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공간에 대해서는 업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관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현재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3호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공간과 집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예외적인 허용 사유로 규정할 때 이걸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윤건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대상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든 아니면 각 공관이든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집 앞에서는 대상으로는 절대 시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하면 가장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집을 규정하는 경우에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고려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대상은 관계없다, 그렇지요? 대상으로 하면 관계가 없다? 다 허용을 해 줘도 된다?

○전문위원 나아정 예, 대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단서들이 걸리게 되는데요.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선 질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금 얘기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의 시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한 겁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헌법재판소……

○전문위원 나아정 모든 경우에 금지하지 말고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위성곤 위원 일정한……

○전문위원 나아정 그래서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지 말아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집회까지는 금지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윤건영 의원안은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그리고 또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자 이런 거네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위성곤 위원 윤건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윤건영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를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이고요. 지금 헌법불합치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일정한 제한이 없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추가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

에 약간 장소가 일치했었기 때문에 생긴 법률 공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에 보면 국회는 그냥 ‘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관저, 공관 이런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직무냐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직무나 활동이나 비슷하다고 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행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활동’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통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관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권철승 위원 그런데 그 직무도 지금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김성희 위원 그래서 기능이나 안녕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그래서 사실은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없어도 관저에 대해서는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단서조항에서 그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리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허용하도록 하여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단서조항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용혜인 위원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새롭게 집회·시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무실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엄 해제를 방어했던 지난 12월 3일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던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 주변 100m 이내를 보면 대규모 시위가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수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대 금지구역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사실 불법으로 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최근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당시의 녹취록도 보면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이유로 병력을 빼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경찰의 녹취가 공개된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시위 절대 금지구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지난 12월 3일을 수호하려고 했던 헌정질서에 맞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백악관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시위를 하는 군중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유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해서 왕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조차도 사실은 백악관 앞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못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류의 법안심사는 보통 해외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해외 사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 중에서 이런

집회·시위 금지 구역 운영 사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K-민주주의라고 해서 사실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는 전 세계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시법 규제만, 유독 독재시대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를 반성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와대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복귀하면 어차피 대통령 관저로 청와대의 경계 바깥 100m 절대 금지 구역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집시법 11조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금의 정부가 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를 저는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공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헌법기관들의 장에 대한 공관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전혀 위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국무총리의 공관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이 자꾸 이 현재의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절대 금지하는 것이 문제인 취지로 판결한 거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2022년 최근 판례를 보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폭력적이고 불법적 집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 금지만 아니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집회·시위를 규율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현재는 명시하고 있고 집회 수리관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예외적인 허용 규정 역시 저는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러하다라는 점을 지난 회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서 집시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해외 사례를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미국은 폴리스라인이라는 걸 치고 폴리스라인에 맞춰서 시위대가 이동을 하는데 미국 시위의 특징은 행진코스를 시위대가 잡는다는 겁니다. 사상과 집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서 백악관 앞으로 돌든 옆으로 돌든 시위대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고된 대로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신고되지 않은 영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처벌합니다. 이게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대를 몽둥이로 다 친다고 하는데 시위대가 잡은 코스를 시위대가 마음대로 돌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시위와 한국 시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자기 발로 걷는 기간

동안만 시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진적 성격이 강하지요. 그래서 왜 영화에 보시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뽐뽐 도는 것을 흔하게 보실 수 있는데 멈춰 선 형태의 시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만큼에서 집회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타렉스에다가 스피커 달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서 유튜브 하나 켜 놓고 남의 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엄청나게 크게 스피커를 틀어 놓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집회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을 떠드는데도 그냥 이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과 자기 주장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를 어느 공간에서도 열 수 있게 자유를 열어 준다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 육성으로 집회를 하는 것은 저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구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구역 안에 들어가서 농성의 형태로 혹은 말씀드린 대로 주차를 해 놓고 차에 스피커를…… 당장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 당사 앞에 가도 무슨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걸 하루이틀 감수할 수는 있지만 1년 내내 차를 주차해 놓고 스피커에 아침저녁으로 똑같은 노래를 틀고 트로트를 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농성의 특수한 형태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구역 안에서의 그런 식의 농성들을 규제하고 최소한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할 수 있다. 한국도 그렇지요. 사실은 미국 사례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 놓는다거나 사실 거의 괴롭힘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 역시 저는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음 제한이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칙적으로 집회·시위의 어떤 장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이걸 갖고 말싸움할 생각은 없는데 한말씀만 더 드리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 무슨 버스 한 대가 지금 3년인지 4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좌관 일할 때부터 서 있고 매일 스피커를 켜는데……

○**위성곤 위원** 11년입니다, 제가 본 것만.

○**김성희 위원** 11년이군요. 보신 것만 11년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서 있고 당사 앞에도 마찬가지로 형태로 서 있는데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66dB부터 문제면 65dB에 맞춰 놓고 하고 1시간 동안 평균을 내니까 30분은 미친 듯이 틀고 번갈아서 30분은 끄는 방식으로 농성을 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면 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봐도 괴롭힘이지요. 저는 그렇다면……

○**옹혜인 위원** 그런데 현행……

○**김성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현재 스피커를 가지고 소수의 개인들 의견 표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장소의 제한은 뒤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현행법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집시법 개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회 앞에 버스에 대해서는 계고장도 많이 붙어 있고 하는데 왜 집행이 안 되는지는 저도 참 의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 제가 깊이……

○**옹혜인 위원** 그런 건 사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 제가……

○**옹혜인 위원** 그런 직무유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심사를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살펴보겠다는 소리는 차장님이 몇 개월 전에도 했어요, 사실은. 이 자리만 벗어나면, 전부 그 뒤에 앉아 있는 간부진들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은데 이 자리만 벗어나면 까먹는 것 같아.

○**경찰청차장 유재성**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11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경찰이 그냥 단순히 업무 해태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집회를 못 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찰청차장 유재성**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법안심사는 이런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사실 끝이 없지요.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게 부딪치기 때문에 결론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11조 3호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이 부분 헌법불합치를 치유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11조에 있는 다른 법제와 유사하게, 다른 호들은 위헌이 아닌 상태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범위에 맞는 현실을 좀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용해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동감은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정은 해 가야 될 것 같고 또 용해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회·시위 이 조항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삭제해 버리자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습니까, 용해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용해인 위원 제 입장은 변동은 없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에 포함시킬 실익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부분에 다들 공감한다고 하셨지만 법률 개정 논의라고 하는 것은 다 헌법을 기초로 현실의 법안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현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법안 오늘 처리하신다고 하면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서 11조 3호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윤건영 의원님 안과 같이 금지 장소별 단서규정을 통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윤건영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찬성한다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윤건영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저도 해야 되나요? 저도 찬성할게요.

반대하시는……

(거수 표결)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안건부터 참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기권?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 8인,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

○전문위원 나아정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통해서 옥외 집회·시위 등으로 인하여 만에 하나 유발될 수 있는 수용자의 동요 및 소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5조제1항제2호와 제8조를 통하여 개정안이 의도하는 교도소 인근 등에서의 소요 사태를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용혜인 의원안은 함께 논의하신 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부칙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잠시만요. 이것부터 합시다,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 추가하는 부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청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 의견이라면 현행 유지하자?

○전문위원 나아정 현행법을 유지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 의견이 저는 일면 타당한 것 같고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서조항 다는 정도로……

○소위원장 서범수 단서조항으로요?

○위성곤 위원 예.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은?

○김성희 위원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할 수 없도록 바꾸자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지않아요.

○위성곤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허용을…… 이것도 헌법재판소 의견이……

○소위원장 서범수 아닙니다. 이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지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대로……

○전문위원 나아정 예, 현행법대로……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종양·윤건영·윤준병 의원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나아정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제 법률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조 폐지안은.

○소위원장 서범수 3항 삭제하는 부분요?

○옹혜인 위원 예, 그냥 계류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계류합니까?

○옹혜인 위원 전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논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9항에서 제1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옹혜인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간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 8인,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인데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경찰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 법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옹혜인 위원 저도 굳이 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픽시자전거가 안전에 많이 위험이 되면서 기존에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러 이런 법안을 내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동네에 나가 봐도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이 픽시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꽤 많고 거기가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 사실은 위험함을 느끼는 부모님이 많으신데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굳이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신정훈 의원님 발의된 법안처럼 브레이크 장치를 제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가 마련이 되면 보다 더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옹혜인 위원 그런데 픽시자전거가 애초에 살 때부터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사는 건 아니고 사고 나서 사후적으로 개조를 하는 방식인 건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예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옹혜인 위원 그러니까 생산될 때부터 그렇게 생산되는 건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주로 개조돼서 이렇게 판매를……

○옹혜인 위원 개조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옹혜인 위원 뒤에……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교통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픽시자전거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신제품을 생산할 때는 정확하게 제동장치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착된 것만이 KC 인증을 받아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자가 그 이후에 브레이크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겁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면 판매자가 제거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안 됩니다.

○옹혜인 위원 구입자가 제거하는 거면 그러면 청소년들이 요즘에 다 그런 걸 개조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맞습니다. 구입자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요?

그러면 픽시자전거 경주를 하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경주용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경주용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경주용도 처음에는 다 브레이크가 있고요. 경주용은 트랙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그 경주용도 다 단속해야 되잖아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트랙에서만……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여기서 ‘모든 차는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동장치를 떼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것 아닌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지금 경주용은 도로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트랙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건 안 된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저도 법안 제출을 냈는데요. 어떤 법안을 냈냐 하면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같이 함께 부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안을 보류시켰다가 함께 논의해서 의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모든 차라는 게, 그 차의 범위 안에 자전거도 들어가는 범주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전문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픽시자전거에 대한 위험성을 본다면 제가 제안하고 있는 개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넣는다면 충분히 수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처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되면 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경기장에서 픽시자전거 경기대회도 못 연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위성곤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라는 제한적 범위 안에……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것은 맞는데 만약에 개조하는 행위 자체만을 처벌한다 그러면 개조하는 순간 그건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안 되지.

○위성곤 위원 그건 그때 그 법안을 논의할 때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정훈 위원장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것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또 이 제거된 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도 처벌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자체로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성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이나 신정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것은 또 1소위예요. 나중에 윤건영 간사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이거는 한 곳에서 통합해서 심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 궁금한게 있어서……

○소위원장 서범수 예.

○박정현 위원 픽시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상층들이 대개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계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지금 픽시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전거 사고만 통계를 잡고 있는데 굳이 수계로 잡는다고 하면 작년에 한 20여 건, 올해 40여 건 정도 사고가 좀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1건, 운전하다가 학생이 에어컨 실외기를…… 사망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별도로 이 자전거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통계를 아직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내가 참 답답한 게 시스템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법안이 나와서 오늘 심의를 한다 그러면 교통국에서 자료를 빼왔어야 될 거잖아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지금 현재는 올해 통계가 저희들이 한 40건 정도 실제 사고가 난 걸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단속 건수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단속 건수는 지금 446건 정도 저희들이 계도를 했어요. 실제 그중에 2건은 지금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그중에 계도 대상 중에 청소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예, 그것까지는 아직 분류를 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청소년들, 그러니까 성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실제로 14세 미만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청이나?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교육청, 저희들이 어차피 단속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박정현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옹혜인 위원 그냥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면 주무 계장이 마이크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기획계장 이종학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은 18세 이상은 2건 정도고요. 대부분은 18세 미만 그리고 학교 쪽하고도 연계해서 학교 쪽에 통보도 하고 부모님께 계도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대개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사고 발생률도 그게 높은 거고 그런데 실제로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14세 미만은 또 규율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태료로 하는 게 좋은지, 벌금으로 하면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학교 측과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하나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그 사건사고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차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 정보 보고, 메타데이터로 생산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사보고서도 전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형태로 서지를 만들면 통계로 금방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전산 등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데이터 형태로 사건기록 관리를 할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런 데서 이런 논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일단 보류를 좀 하고요. 신정훈 위원님 대표발의한 건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님 대표발의한 건하고 통합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양당 간사 간의 공청회 개최 합의한 건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생명안전기

본법안 제정, 재해영향평가법, 국민투표법 이 다섯 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하시고 공청회 날짜를 오늘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좋습니다.

○옹혜인 위원 전문위원이 발제한다는 건 법안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개략적인 것, 조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전문위원 나아정 먼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교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적·지역적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안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에게 부과하고 있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통적인 부분으로 경찰청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김교홍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정보자료, 범죄 예보·경보,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는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도경찰청예규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과 범죄예방 디자인 개념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범죄예방 진단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과 관련하여서는 동 조치들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에는 원래 경찰청훈령에서 규정되어 있었지만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에는 경찰청훈령이 폐지되고 현재 시·도경찰청 예규가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사항들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두 법안 모두 범죄예방협의체와 지역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나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또 지역 차원의 지역치안협의회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 등과 관계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의 경우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정안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현재 구성된 자치경찰정책협의체와 그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범죄예방에 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 범죄예방 정책의 시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및 협력단체,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에 대한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전문위원 나아정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보시면 신정훈 의원안은 치안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치안 관련 기술의 개발, 장비의 첨단화 및 표준화, 통계의 작성 및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윤재옥 의원안은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배경에 대해서 보시면 혁신적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들을 치안 분야에 도입하여서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통계청은 2024년 12월 26일 치안산업 특수분류를 고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치안산업에는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 제품 도소매업, 건축·시설 설계 및 공사업, 서비스업,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실시한 23년 치안산업 규모에 대해서 시범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사업체 수는 1만 4189개 사이고 매출액은 총 37조 7473억 원, 종사자 수는 65만 935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의원안은 총 4장, 본칙 28개,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윤재옥 의원안은 본칙 19개,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치안장비 등의 표준화 그리고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치안사업자의 신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치안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치안산업 통계조사, 치안산업진흥협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훈 의원안에서는 신기술품목의 인증제도 및 인증신기술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치안산업 진흥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 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고요. 이러한 진흥법은 지금 거의 50개에 육박하는 진흥과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단속법이나 규제법이 시대가 바뀌면서 단

속과 규제와 더불어서 진흥이 포함되어 있는 법들이 있고 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라든지 승강기산업 진흥법처럼 우리 위원회에 그런 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그런 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치안산업진흥법 역시 그런 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제정되는 법이고요.

최근 범죄가 지능화·복잡화되고 있고 치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치안과 학기술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체계는 다른 진흥법들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치안장비의 표준 제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기술 인증 등 치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만 자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안전본부장님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안전본부 관련해서 생명안전기본법안, 재해영향평가법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 간단하게 듣고 오늘은 공청회하는 날만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평소에도 잘 도와주시는데 오늘도 좀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 오늘 주시는 말씀들 잘 들어서 법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생명안전기본법 소위 자료입니다.

박주민 의원, 용혜인 의원, 한창민 의원 공동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 분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교통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크게 높아짐에 따라 국민 안전의 이념과 추구하는 가치, 안전관리 원칙과 기준, 국가 등의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하는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서 본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안전권이라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법으로 도입할지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관계 법률의 규율 범위와 중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에 안전 관련 위원회 조직의 운영 및 계획 수립 등에서 두 법률의 규율 범위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고 재난 및 사고유형별로 안전사고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기구를 정하고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율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제정안에서는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안전법을 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안전관리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따른 국가 재난·사고 조사기구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서 현재 25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법 취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신 대로 일부 다른 법률과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률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법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재해영향평가법안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김종양 의원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11개 조항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제도에 관해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피해 유발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가 1996년 6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정안은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해 조문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를 분리함으로써 향후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통합적 사항을 규율하기 어렵게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은 분법에 따라서 총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새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했고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협회 설립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협의 절차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에서는 승인기관, 협의기관이 있는데요.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인 관계 행정기관이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기관인 행안부장관에게 제출을 하는 형식이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그것을 승인기관이 협의기관에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이 된 이후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에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보완하도록 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재해영향평가법에서는 재해영향평가서를 관계기관의 장이나 개발사업자가 작성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협의 의견을 통보하고 의견을 보완하는 과정에 협의 조정이라는 내용을 다시 포함시켜서 재해영향평가협의회로부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또 재해영향평가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나 사후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지금 매년 30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조문으로는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의 법률로 조금 더 정치한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라든지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법 해야 되는데 또 나가셔야 되지요?

자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관련해서 논의할 순서인데요. 이것 어차피 제정법안이라서 공청회를 한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간단하게 전문위원 설명만 듣고 그리고 선관위의 종합적인 의견 간단히 듣고 날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국민투표법에 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법은 총 2건의 전부개정안과 5건의 일부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5건의 일부개정안의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있는 내용들을 국민투표법 개

정안에 집어넣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전부개정안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의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민투표는 첫째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고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연혁을 보시면 2차 개정헌법에서 국민투표제도가 신설된 이래로 총 6회에 걸쳐서 국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4쪽의 실시 현황과 5쪽의 주요 국가별 국민투표제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2건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총 14개 장 1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들은 전부 다 재외국민투표와 동시실시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여러 조문을 통합하여 총 15개 장에 김영배 의원안은 108개 조문 그리고 권칠승 의원안은 118개 조문으로 개편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정안의 비교표를 보시면 권칠승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에 비해 10개 조문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김영배 의원안이 발의된 일자가 2024년 6월이고요 권칠승 의원안이 발의된 날짜는 2025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권칠승 의원님 안이 김영배 의원님 안에 비해서 최신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권칠승 의원안에서는 노약자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화, 딥페이크 규정 등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투표인에 대한 공보 작성 시 여유기간을 두는 등 절차의 효율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국민투표운동기간과 관련하여 박스표를 보시면요 김영배 의원안의 경우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같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일 14일 전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권칠승 의원안은 이게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당일만 빼고는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밑의 박스표의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투표·개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방지 조항이 권칠승 의원안에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조항인데 부정선거 의혹 등에 관하여 이것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들인데요.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들어와 있고요. 권칠승 의원안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전부개정안 전체 내용은 크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요. 주로 내용은 투표권자 나이라든가 사전·거소·선상투표 등 공직선거법상 투표 절차 도입 그다음에 벌칙도 유사 수준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재외국민투표 및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1962년에 제정되고 89년에 전부개정된 이후에 용어 변경을 위한 타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일부개정 이후에 법률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도 역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국민투표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또 종전에 엄격하게 제한된 국민투표운동 방법을 지금 확대하고 있으며 재외투표나 선상투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제거하고 있고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상의 전면개정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일정은, 김성희 위원님이 간사십니까?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저하고, 두 사람한테 일정을 맡겨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라도.

○소위원장 서범수 오늘 해서 같이……

○옹혜인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5개를 하루에 다 잡으실 계획인 건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옹혜인 위원 그렇겠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아마 제 생각은 예를 들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니까 하루에 같은 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나머지 생명안전기본법, 재해영향평가법, 국민투표법은 오전, 오후로 나누든지 날짜를 따로 하든지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요?

그렇게 김성희 위원님하고 오늘 해서 제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주라도 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다음에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은 제가 알기로는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선거구 확정 문제라든지 지역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거론이 되지 싶은데 일단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관련해서 선관위도 계시니까 그 부분 하나는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현수막법 관련해서 지금 법안1소위에서는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된 상태라서 2소위에서도 관련된 법을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를 했고 1소위 진행되는 것 봐서 하자고 하셨었는데 1

소위가 진행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마 내일 전체회의를 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에서 강행처리 하시겠지요?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의사일정안이 공지가 되긴 했습니다, 행정실에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반대 표명을 하고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한 팔구십%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당법도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소위원장 서범수 이제 남은 게 두 가지입니다. 윤건영 간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를 하는 것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대북전단 관련 이거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1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박진 이태원특조위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는 점에 대해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말씀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밀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이해식 의원안은 국가 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가변 2차 가해 방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2차 가해 방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규정 형식과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인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일반적인 2차 가해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에서는 2차 가해 방지 조문하에 2차 가해 행위를 정의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해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을 일반적인 의무와 국가 등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 형식에 있어서는 입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벌칙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의 경우에 심의 과정에서 관계법률에 따라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서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십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두 가지 주셨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벌칙조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처럼 벌칙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찌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3조의2의 2차 가해 방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조항을 먼저 규정을 하고 그 이후에 국가 등의 책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4조만 있더라도 사실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의무조항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3조 2항은 생략해도 된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전문위원 나아정 그렇다기보다는 12·29여객기참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장 서범수 이 조항이 없다?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것을 넣는 게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나아정 아닙니다. 오히려 법체계상으로는 이게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뭘 고려하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서범수 비교를 해서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형식이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달라……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런데……

○위성곤 위원 형식이 다른데 지금 새로 신설한 형식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 나아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한번……

○위성곤 위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애매해요. 자꾸 다……

○전문위원 나아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2차 가해 방지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식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낫다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

○옹혜인 위원 3조의2 살리고 필요하면 여객기 참사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여기서 부대의견을 달기에는 좀 그렇고……

○옹혜인 위원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서범수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3조의2를 넣자는 거 아니에요?

○위성곤 위원 3조의2와 그리고 4조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삭제 유무를 부처가 동의했기 때문에 부처가 동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위성곤 위원님……

○소위원장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저도 이 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2차 가해 얘기가 나온 차제에 전문위원님께, 이게 개별법들에 이렇게 규정이 됩니까, 아니면 2차 가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일반법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없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개별법들에 들어가고 있다?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런데 벌칙에서도 현재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 사실 유포와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처벌조항에 2차 가해 행위가 다 포섭이 된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사실은 2차 가해 행위라는 용어만 없을 뿐이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에 넣는 것은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참사 같은 경우에 최근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국민들 중의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놀리고 문제 제기하고 모욕을 주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해로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더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저희가 법률로 규정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환기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게 없었다고 처벌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정치권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포함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3조의2 및 안 4조를 수용하고, 안 79조는 굳이 만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전문위원 나아정** 나번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죄송한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5페이지 보시면 79조에 1호가 있고 2호가 있잖아요, 개정안에 보시면, 2호는 2차 가해와는 별개의 벌칙조항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나아정** 현행법의 79조 1항을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면 1호가 2호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그래서 이거를 각호로 구성했기 때문에 형식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호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 차원에서 보면.

○**옹혜인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나아정** 나번, 조사위원회 감정인 선서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9항은 감정인 선서 또는 선서서 제출에 대한 내용인데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의2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42조의2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요건 관련해서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사항 현행법의 보상금 제도와 중복성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대상인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와 현행 조사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인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는 유사한 내용이라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포상금 제도와 현행 보상금 제도는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조사위원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현재 저희 위원회 보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반면에 개정안 포상 규정은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된다는 형식이 달라서 양자 운영에 따라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검토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로 규정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하자는 안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도 좋다는 거예요,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전문위원 나아정 다른 유사 입법례들을 보시면 포상금 지급 근거와 관련해서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조사위원회 의견 한번 내 보십시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잠시만요.

○박정현 위원 내부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사실 저희가 이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그걸 준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냥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로 법안에는 규정하면 규칙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전문위원 의견은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규정을 해 놔단 말이지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법률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현행 규칙에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사참위나 진화위가 규칙에 위임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르는 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별도 규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예.

○소위원장 서범수 이태원참사위원회가 언제까지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저희는 조사 개시를 6월 17일 날에 했고요 그로부터 1년 뒤고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3개월 연장할 수 있어서 만약 연장한다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박정현 위원** 국세기본법은 지속적인 법이고 이태원 관련 법은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럼시다.

다른 내용……

○**전문위원 나아정** 다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치유휵직 신청기한 연장 및 휴직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치유휵직 등 피해자로서의 인정이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신청주의를 채택하면서 신청기한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의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연장하고 치유휵직의 신청기한을 법 시행 후 2년 이내까지 연장하고 휴직기간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기한과 연계하여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따른 추가 피해자 인정 여부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자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치유휵직 신청기한 연장 취지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치유휵직 신청은 피해자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치유휵직 신청은 지원금 지급 신청과 달리 피해자 인정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휵직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보다 원칙적으로 치유휵직 신청기한이 더 나중에 도래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의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한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연장한다 그러면 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내지는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자 인정에 대한 조사는, 심의는 누가 하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피해구제심의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따로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이 조사위원회 활동하고 같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구제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구제위원회는 따로 있는 거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건 언제까지 하는 건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것은 별도의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러 피해구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그 구제위원회라는 것은 이 특별법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구제위원회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닙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해자구제위원회이고, 다만 이 법에서 조사위원회만 기한이 정해져 있고 구제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존속기한이라든지 언제까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이 다 끝나면 이제 구제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되겠지만 물리적으로 존속기한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행안부 안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안에.

○소위원장 서범수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조사위원회하고 구제위원회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뒤서 언제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피해자라고 인정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분들이 신청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신청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거기서 정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기한이 끝나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내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저는 전문위원 의견에……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이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몇 페이지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12페이지입니다.

제52조제2항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로 명기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60조에서 ‘이 법 시행 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해식 의원안 같은 경우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단서에서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처럼 9조 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는 경우에 이해식 의원안에 단서 규정을 포함해서 이게 더 길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안대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의견 내주십시오.

○옹혜인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라번, 장기 추적 연구 시행 및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의 근거와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형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추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는 전담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참사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외에 기존 심리지원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피해자의 다양한 소재지에 따른 접근성을 고려해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5개소 그리고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63개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등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 장기 추적 연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 참사만을 위해서 트라우마센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법률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트라우마센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옹혜인 위원 동의하신다는 게 67조 3항은 남겨 두고 72조의2 이것은 신중검토 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태원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유족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게 말씀……

○**위성곤 위원** 유족들께서는 실제 독립적인 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로 그 근거를 말씀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만나 뵈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한 군데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에다가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쉽게 원하는 치료를 받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유족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실 거고 그 근처에 하실 텐데 제가 법률에 동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면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행안부가 취해 주시는 의견으로 이 법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저희가 피해자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부 또 관련 부처들 또 자치단체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또 익명성을 요구하시는 분 또 개인적으로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잘 반영해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보면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이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하겠다 이러면 그곳에서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게 될 텐데 그러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저도 법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트라우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간접적으로만 파악한 건데, 제가 이해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상황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정신상담하고 심리상담이 좀 다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 수요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태원특조위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지난번 오송 참사 때 충북이나 청주시도 그렇고 공급자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공급을 했다, 그런데 수요자는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꾸준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에 대해서 특조위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씀을 주시고 이유는……

제가 이해한 키워드는 출장과 상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로 가게 되면 정신과는 굉장한 중증이나 약 처방이 아니면 별로 다룰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여기 왜 오셨나요’ 약간 이렇게 된다 하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생업이 바쁘니까 여기 가라라고 해도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찾아가 줘야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약물 처방이 아니더라도 대화가 진행되는 상담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태원특조위, 오송 참사, 계속 뭔가 간극만 있고 해소가 될 되는 느낌이라서 왜 이 간극이 있는 것인지 특조위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가 위원님께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 또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상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마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보다 긴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현을 보장하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별도의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치유희직 신청 기한 및 휴직기간 연장 사유 등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개정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내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서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말씀하십시오.

○**용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해식 의원님 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이해식 의원님 안 말고도 우리 소위에 함께 계시는 권철승 의원님의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제한되어 있는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저는 나머지 2개의 법안도 굉장히 조속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법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위에 있는 의원 들의 법안이 누락되고 다른 것만 상정되어 논의된……

○**위성곤 위원** 오늘 땡겨서 심의하지 왜……

○**용혜인 위원** 이것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정된 상태인데요. 아무튼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의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는 개정안 그리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명시한 개정안이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안 역시도 저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마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정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그리고 징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고요. 여러 정당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인 만큼 빠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보상 절차 신설도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빠르게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국회에 찾아오셔서 이 3건을 소위에 상정해서 빠르게 심사해 달라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국회의 늦은 응답이 다시 유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로 남지 않도록 나머지 2건에 대한 조속한 상정과 논의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3주기 추모식 당시에 제 정당의 지도부가, 여야 할 것 없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가 그 약속을 다 같이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정말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이제 행안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은 경찰 관련 법인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및 제5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행위 발생시 현장 통제, 전단 살포 제지 및 해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한정애 의원안은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와 그 밖의 행위 및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 및 제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동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접경지역에서 신고되지 않은 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한 경우 살포를 제지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안은 위험구역 출입금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경우에 경고하고 긴급한 우

려가 있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는 하는 내용인데 정동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
의 관계가 예민한 경우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
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는 위법한 전단 살포행위의 제재 규정으로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제재
규정은 금지 의무 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 개정안의 내용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등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보면 제24조는 전단 살포의 신고 의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 근거도 함
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에 의원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
이는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심사경과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공안전법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
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추가적인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한정에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전문위원 말씀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정에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지’라는 표현
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제지’로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접경지역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북
한의 도발 등 위험성을 통일부·합참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
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행령에서 유관부처 위험성 판단 절차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
가 있고 전반적으로 한정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동영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도 남북
관계발전 기본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경찰관 직무상 일반법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 특
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동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할 소지가 있
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사실 비행금지구역 설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전쟁을 대비해서
어쨌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P-518 비행금지구역 포함
해서 이런 비행금지구역들을 군사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어떤 비행물체도 못 날아다니는
게 하는 것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예전에 국토교통부가 무인자유기구 언맨드 프리 벌룬(unmanned free balloon)에 대해서 이게 국제규약상 비행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구가 아닌 것처럼 엉뚱한 행정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고통을 받게 됐는데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한 이런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물체를 날리면 제지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경찰법까지 바꿔서 제지를 하게 하나, 못하게 하나를 따지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되게 안타깝고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체를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의결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써서라도 저는 반드시 제지를 해서 안보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정동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도 남북관계발전법이나 여기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약간의 협상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 일반 직무집행이 아니라 법체계상 그쪽에 가서 논의되는 게 더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쭙볼게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한정에 의원안은 남북관계랑 상관없이 이게 재난안전 기본법의 위험구역 그다음에 항공안전법의 비행금지구역 출입 제한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 뜻 맞나요?

○전문위원 나아정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경찰관이 그러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을 해서 경찰관이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의 제6조를 보시면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조항인데요. 항공안전법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미 범죄행위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 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위험구역으로 설정이 됐으면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나 제지할 수 있는 게 매치가 이미 돼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안전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 사중의 조치를 법조항으로 하는 건데 이게 꼭 그럴 실익이 있냐, 법체계도 간단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명확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는 공익적 실익이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얘기를 다 주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문위원님 요지는 이것이 없어도 이미 제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그러면 저는 불필요하다고 의견 남기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전문위원 의견으로 가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21대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22대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국회에서 대

북전단 제지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관련 법에 이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원장 서범수 차장님, 말씀하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저희가 이제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위법성 판단을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성 판단을 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그런 기구를 날리고 하면 이게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만 경찰관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의 행정운원을 받아서 행정응원 요청이 있으면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6조에 의해서 경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차장님, 제가 실무를 했는데요. 6조에 의해서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제가 경기북부청장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지금 경찰이 제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풍선 날린다 하면 보안과 직원들 가면서 아니면 파주 넘어가는 데 도로 차단해서 위험 발생의 방지라는 명목하에 단체로 오는 것도 막고 다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자치단체 행정응원에 의해서……

○소위원장 서범수 자치단체 아니고 경찰이 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을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희 위원 그게 훌륭한 서범수 위원님 같은 분이 지휘하실 때는 진행이 되고 어떤 때는 법적으로 미비했다고 안 하고 하니까 규정을 해서 모든 사람이 서범수 청장님처럼 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저희가 법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위험 발생의 방지 의무가 있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잖아요. 그것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름만 들어도 내용을 ‘아, 이게 뭘 하지 말라는 법이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만들면 ‘재난안전법, 재난관리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이 왜 대북전단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 국민들은 한참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이걸로 인해서 처벌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 부분은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굳이 이걸 따고 들어와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것으로 막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금 넣어야 될 실효가 있을까?

물론 저도 그 현장에 많이 가 보고 직접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랄든지 이런 것을 안다고요. 앞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데 이 법을 다시 끌어들이고 와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의율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 줘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소위원장 서범수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 박상학이 막 단체로 올 때 10개 중대씩, 20개 중대씩 동원해서 그걸 막았다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담당 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 저보다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담당 과장이 말씀을 해 보세요.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안보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요. 예전에도 박상학 씨나 대북단체들, 탈북단체들이 이런 것 할 때 하긴 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한 이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우리들의 자발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의사에 의해서 경찰을 휘두른 방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6조의2 조항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있는 위험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 관계 기관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바탕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법에 넣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을 해석하기가. 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일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동영 의원안이 들어가면 법적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고백한 대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도록 이 5조가 법 규정이 아주 애매하구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려에 대한 판단을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다음에 이 안에 K-드라마 이런 것 USB에 넣어서 날리고 그러잖아요, 전단 살포할 때.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 부분은 심의관이 대신……

○권철승 위원 USB에 드라마 같은 것, 영화 같은 것 넣어서 막 보내잖아요. 모르시나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님 청장님 하실 때 집행했던 것과 변수가 생겼던 게 23년도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북

전단이 불법행위라고 했던 게 위헌 결정이 났고 또 그것을 제지한 경찰관을 때린 사람을 저희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서 기소한 게 대법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위헌 결정이 났던 2023년 9월 이후로는 사실 저희 경찰이 전단 날리는 것을 현장에서 제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윤희근 청장이나 조 청장 계실 때 경찰이 자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말씀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가 2023년 9월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6조가 당연히 저희 경찰의 조치규정이지만 이 조치가 생긴다고 하면 현장 경찰관들이 각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은 더 공감을 받는 법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헌 판결의 내용이 이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다른 법령으로도 제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취지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맞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거기 콕 찍어 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콕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집행법에 내용을 명확하게 넣으면 이것은 절대로 위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판결문의 취지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무적 판단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 제가 문광위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해요. 아예 처벌을 안 해요. 그것도 다 이런저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문제는 우리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아예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나면 처벌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안보심의관님, 조금 전의 말씀이 현재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제지를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였지요?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다른 법률로 제지할 수 있는 법률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위헌 결정의 취지도 그렇고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도 그렇고, 이게 설명이 좀 쉽지 않은데 경찰관이……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그것 제지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뭐냐고요?

○권철승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제가 답변 잘못 드렸는데요.

○**권철승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위험성 판단 절차가 따로 있었어야 되는데 대북전단 날리는 것 자체를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보고 성급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렸을 때 북한의 도발로 이어져서 사회적 재난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고려를 충분히 하고 나서 법 집행을 했어야지 딱 날리는 자체만 가지고, 경찰이 그 당시의 전반적인 정세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리는 행위만 가지고 그것이 불법행위라고 전제를 하고 체포하니까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법 조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지금 그 내용과 다르게 법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그래서 이 법 조항이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구역을 설정하면 저희가 들어가고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부처에 보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의 정세 판단을 받아서 이것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됐을 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서 굉장히,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제6조의2에 동의하는 이유지요, 그 말씀이?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그렇습니다. 절차 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성곤 위원** 한정애 의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지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한정애 의원님……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부분이 그런 절차를 별도로 만들어서 현장 경찰관들의 법 집행 부담을 조금 줄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차 없는 법 집행을 저희가 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까 권철승 위원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 대북전단 풍선이 무인자유기구입니까?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현재는 무게가 2kg 이상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대북전단 풍선이?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게 정확하게 무인자유기구에 해당이 돼요, 풍선이?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안보기획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은 2kg 이상을 부양시키는 자유무인기구 속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도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무인자유기구라 하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자유무인기구라 해서 조종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2kg 이상이 부양되는 것은 항공안전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규정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ICAO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중

량 2kg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 그러니까 의지 없이 그냥 날아가는 언맨드 프리 별론의 경우에도 비행체로 규정한 게 국제항공규정에 따른 규정이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 규약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 풀어 주던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그 풍선은 우리가 조종한 게 아니니까 비행기구 아니야’라고 거짓 해석을 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때 이게 안 된다고 했으면 그만이었던 문제인데 ‘이 풍선은 날려도 되는 것 같아요’라고 국토교통부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가, 풍선을 날리다가 나중에 국토교통부가 자기들이 엉터리 해석했다는 것을 이미 국정감사나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반성하고 철회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항공규약상 비행물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따로 판단할, 해석할 법적인 힘이 없고 그냥 국제항공기구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풀어 주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2~3kg 해서 풍선 날리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못 하는 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저는 정동영 의원님이나 한정에 의원님이나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법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든 다른 법에 의하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 공익적으로 더 효과적이나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국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북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평화를 유지·발전하는 데 좋다는 국가적 견해가 한 축에 있는 거고요. 저희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대북인권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남한의 사정을 폐쇄된 북한주민들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고 이번에 진보정부, 그러니까 북을 자극하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철학을 집행하면 저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있는데 굳이 항공안전법 이런 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복잡한 것을……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의 답변이 조금 비겁한 얘기가 아니냐.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빌미로……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믿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법적 근거를 핑계로 대다 보니까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존중합니다. 견해가 달라도 존중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 그것 존중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틀렸다는 정치적 공격과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실익이 있겠느냐, 법체계만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저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대북전단을 막아야 되겠고 그걸 막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견해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한말씀만 다시 반복해 드리면 P-518 비행금지구역, 휴전선과 DMZ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요. 오랜 안보 사정을 거쳐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비행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군이 담당하는 구역이고, 제가 법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사지역에서 군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체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군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역할을 경찰에게 맡기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방부에서 설정한, 군에서 설정한 비행안보구역에 비행체를 날리는 행위가 이게 정치의 자유랑 연결되냐? 저는 정치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안보를 넘어서는 정치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차장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사실은 일반법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그 일반법에 특정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을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야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조금씩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이게 정리가 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남북관계발전법 법률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이 부분은 아직 상임위 의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 발의는 되고, 상임위에서 상정은 되고 심의는 안 됐나요?

○**전문위원 나아정** 상정은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거기에 전단살포 신고 의무 그리고 그와 관련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 명령 근거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지도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 때그때 조금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위성곤 위원** 여전히 서범수 위원장님께서 청장을 하실 때 했던 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불분명하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위성곤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 측 의견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 논의해도 계속 공전만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한정에 의원안만 넣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정부 측은 한정에 의원안도 동의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정부 측……

○박정현 위원 정동영 의원안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정부 측 의견대로 한정에 의원안 정도로 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논의해도 챗바퀴만 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게 훨씬 여기의 목적에 맞는 건데요. 제가 아예 이것을 제지하지 말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모습도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지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수민 위원 없습니다. 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병도 위원 토론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박수민 위원 충분히 말씀드렸고……

○한병도 위원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결론을 내시지요.

○위성곤 위원 안 되면 표결하시고요. 아니면 만장일치……

○박수민 위원 기본법을 손대는 게 저는 좀, 그거 꼭 그래야 되는지? 아마 지금 충분히 단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지가 있으셔서.

그래서 경찰들이 진짜로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 마지막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꼭 이게 없으면 지금…… 북한 자극하지 말자라는 대북정책이 서면 그것에 맞춰서, 통치 철학에 맞춰서 경찰이 집행하는 것도 저는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통치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합니까, 대행님?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자치단체의 행정유원을 통해서 지금은 경찰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조금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법체계가 이중·삼중이라는 그런 정서적 불편함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 항공안전구역이나 거기에서 출입 자체가 제지될 수 있는 과잉의 여지는 없습니까? 그것만 주시면 더 이상 토론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사실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이 이제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

게 개정이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민 위원 토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경찰청 의견대로 가지지요. 일을 하겠다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지금 이것 근거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법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에?

○박정현 위원 아니,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김성희 위원 특히 그것을 제지하는 경찰을 때렸는데 그게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것으로 나온 경찰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도 하겠네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보안과 직원이 잘못했겠지. 보안과 살살 잘 다스리면 되는 데.

차장님, 현장에 안 가 보셨지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는지, 박상학 씨라든지 대북전단 관리하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제가 현장에 가 보지를 않아서……

○소위원장 서범수 잘 모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처음부터 와요. 처음부터 같이 동행해서 ‘야, 너는 이 자리가 좀 안전하니까 이 자리에 가서 대북풍선 날려’ 이러고 있다고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관리한다고. 그런데 단체로 우르르 몰려왔을 때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앞에 제지를 하지만 한 두 사람씩 왔을 때 그것을 경찰 모르게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보십니까?

안보심의관님, 경찰 모르게 대북전단을 살포, 풍선을 올린다고 보세요? 경찰 모르게?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안보기획관리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법 취지 자체가 경찰이 현장에서 위험성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은 집행하면서 간략하고 명쾌한 규정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사전적 절차를 대령에 규정해서 합참이나 통일부 등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 판단을 한 자체에서 현행법 위반이 있으면 제지·경고를 현행법처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면 현장 경찰관들이 훨씬 명료하고 명쾌하게 적극적인 경찰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에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 알아서 막으라면 막고 풀라면 풀고 이거잖아요, 지금?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막자, 말자…… 그 이후의 후폭풍은 경찰이 다 뒤집어쓴 거고. 그런데 이 절차를 밟으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정리해 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 단독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소위원장 서범수 이때까지 잘해 와 놓고는 그래요?

○박정현 위원 이때까지 못 했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관계기관 협의하에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표결합시다.

○박정현 위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표결을 하십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찰청의 입장도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꼭 있어야 이것을 규제를, 제지를 할 수 있느냐? 옥상옥이고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충분히 제지가 가능한데도 자꾸 경찰이 이것을 다른 법을 의율해서 제지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뭔가 모양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이에요. 특정된 사건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 그러면 다른 조항 자꾸 들어올 때 어떻게 할래요, 경찰? 이거 하나의 특정 사안이잖아요. 다른 특정 사안에서 이것도 막기 위해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 뚫려 버리면 자꾸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안보적인 문제지요, 도발 가능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예, 저도 압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안 되면 표결을……

○소위원장 서범수 표결합시다.

○위성곤 위원 예,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한정에 의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적위원 11인 중 출석 8인,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기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및 5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 다 마쳤습니다.

○박정현 위원 훌륭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권칠승 김성희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주호영 한병도

○출장 위원(1인)

박덕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경찰청

차장 유재성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감사관 고정삼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